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87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전재수·김재원·민형배

이기헌 • 채현일 • 강득구

허성무 • 박해철 • 이학영

송기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연간 최 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불거지고 있음.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소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폐업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다인 98만 6천명을 기록함. 올해는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어려움이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위한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대표자의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1항제1호 중 "4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 2호 중 "4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86조의3(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 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 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 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 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

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 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3. 4. (생략)
- ② ~ ⑧ (생 략)

1
<u>5천만원</u>
2
<u>5천만원</u>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